

복지후생지침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

2018.8.21

케이티 노동조합
위원장 김 해 관



[복지후생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무보, G직, C직, A직, Sales직 직원(청원경찰 및 전문경력직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u>순직자의</u> 취학자녀에 대학학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개인연금지원 등 복지후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무보, G직, A직 직원(청원경찰 및 전문경력직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u>순직자(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u> 취학자녀에 <u>학자금</u> 지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개인연금지원 등 복지후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내용] C/S 직 G 직 전환 대상자 명확화</p>
<p>제2조(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삭제(2014.12.31) 다. <생략> 라. (추가) 2. <생략></p>	<p>제2조(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u>순직자의 자녀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u> 1) <u>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의 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자</u> 2) <u>관련법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위인정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자</u> 3) <u>국외 대학과정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자.</u> 단, 어학연수 또는 이수 등 과정은 제외 2. <생략></p>	<p>[개정내용] 대학학자금 지원제 부활</p>

현 행	개 정	비 고
제4조(지원기준) ① ~② <생략> ③ (추가)	제4조(지원기준) ① ~② <생략> ③ <u>순직자 대학생자녀학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재직직원 장학금 지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지원기간은 해당 순직자가 정년퇴직했을 시점까지로 한다.</u>	[개정내용] 대학학자금 지원제 부활

※ 부칙 (2018. XX. XX)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4년 6월 1일 이전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은 지침 제205호 복지후생지침(2012.4.10. 개정)에 따른다. 2014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지침 제240호 복지후생지침(2014.12.31. 개정)에 따른다.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지침 제000호 복지후생지침(2018.XX.XX. 개정)에 따른다.